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29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주철현·김병주·홍성국

양정숙 · 이용우 · 임호선

신현영 · 장철민 · 한준호

오영환 · 이원택 · 김민철

최혜영 · 임오경 · 김남국

이성만 • 이수진 • 윤영덕

정청래 · 장경태 의원
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

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9조제1항, 제67조제5항 및 제71조 등).

법률 제 호

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지불"을 "지급"으로 한다.

제67조제5항 전단 중 "추월선(追越船)은"을 "앞지르기 하는 배는"으로, "추월"을 각각 "앞지르기"로, "추월선을"을 "앞지르기 하는 배를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추월"을 "앞지르기"로, "추월선을"을 "앞지르기 하는 배를"로 한다.

제71조의 제목 "(추월)"을 "(앞지르기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추월선은"을 "앞지르기 하는 배는"으로, "추월"을 각각 "앞지르기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"추월선으로"를 "앞지르기 하는 배로"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추월"을 "앞지르기"로, "추월선으로"를 "앞지르기"로, "추월선으로"를 "앞지르기 하는 배로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추월하는"을 각각 "앞지르기하는"으로, "추월이"를 "앞지르기가"로, "추월당하는"을 "앞지르기 당하는"으로 한다.

제77조제5항제1호 중 "추월"을 "앞지르기"로 한다.

제92조제4항제1호·제2호 및 제3호 중 "추월"을 각각 "앞지르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비용징수 등) ① 해양수산	제29조(비용징수 등) ①
부장관은 제26조제3항 및 제28	
조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	
표시·제거에 드는 비용의 징수	
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	
선박소유자에게 비용 <u>지불</u> 을	<u>지급</u>
보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	
할 수 있다.	<u>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7조(좁은 수로등) ① ~ ④	제67조(좁은 수로등) ① ~ ④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⑤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	5
른 추월선(追越船)은 좁은 수로	<u>앞</u> 지르기 하는 배는
등에서 <u>추월</u> 당하는 선박이 <u>추</u>	<u>앞</u> 지르기 <u>앞</u>
<u>월선을</u> 안전하게 통과시키기	<u>지르기 하는 배를</u>
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	
<u>추월</u>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적	<u> 앞지르기</u>
신호를 하여 <u>추월</u> 하겠다는 의	<u>앞지르기</u>
사를 나타내야 한다. 이 경우	<u>.</u>
<u>추월</u> 당하는 선박은 그 의도에	<u> 앞지르기</u>
동의하면 기적신호를 하여 그	
의사를 표현하고, <u>추월선을</u> 안	<u>앞</u> 지르기 하는
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	<u>배를</u>

을 취하여야 한다.

⑥·⑦ (생 략)

제71조(추월) ① 추월선은 제1절 저 이 절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.

- ② 다른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(正橫)으로부터 22. 5도를 넘는 뒤쪽[밤에는 다른 선박의선미등(船尾燈)만을 볼 수 있고어느 쪽의 현등(舷燈)도 볼 수없는 위치를 말한다]에서 그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추월선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.
- ③ 선박은 스스로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추월선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.
- ④ <u>추월하는</u> 경우 2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가 어떻게 변경되 더라도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

•
⑥·⑦ (현행과 같음)
세71조 <u>(앞지르기)</u> ① <u>앞지르기 하</u>
는 배는
앞지르기
<u></u> 앞지르기
<u>.</u>
· ②
르기 하는 배로
3
<u> 앞지르기</u>
배로

· ④ 앞지르기하는
앞지르기하는
立一一一一

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월당 ----앞지르기가-----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--앞지르기당하는-----하다. 제77조(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제77조(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항법) ① ~ ④ (생 략) ⑤ 제4항에 따른 피항동작이 침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 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동작은 피하여야 하다. 1.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 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 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 하는 행위(추월당하고 있는 -----앞지르기-----선박에 대한 경우는 제외한 다) 2. (생 략) 2. (현행과 같음) ⑥ (생략) ⑥ (현행과 같음) 제92조(조종신호와 경고신호) ① 제92조(조종신호와 경고신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~ ③ (생 략) ④ 선박이 좁은 수로등에서 서 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 우 제67조제5항에 따른 기적신 호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선박의 우현 쪽으로 <u>추</u> 1. -----

<u>월</u> 하려는	는 경우	에는	장음	음 2회
와 단음	- 1회의	순서	로 9	의사를
표시할	것			

- 2. 다른 선박의 좌현 쪽으로 추
 월하려는 경우에는 장음 2회
 와 단음 2회의 순서로 의사를
 표시할 것
- 3. 추월당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추월에 동의할 경우에는 장음 1회, 단음 1회의 순서로 2회에 걸쳐 동의의사를 표시할 것
- ⑤ ~ ⑦ (생 략)

<u> 지르기</u>	-
	-
2 <u>o</u>	-
<u>지르기</u>	-
	-
3. <u>앞지르기</u>	-
<u>앞지르기</u>	-
	-
	-
⑤ ~ ⑦ (현행과 같음)	